

1. 개정이유

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포함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를 개정('25.3월) 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적용 범위를 기존 자동차에서 건설기계 까지 포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적용 대상 확대(안 제76조제2항 개정)

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(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2)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까지 포함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6. 16. ~ 7. 25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심사 진행 예정

환경부령 제 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제2항 중 “자동차”를 “자동차 및 건설기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6조(배출가스 관련부품) ① (생 락)	제76조(배출가스 관련부품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<u>자동차</u> 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”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 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 <u>자동차 및 건설기계</u> ----- ----- -----.